

네트워크 회의  
-전국 광역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의

“인권도시를 위한 지역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 인권기본조례를 중심으로 -

윤대기  
[한국, 인천시 인권위원장]

## 1. 여는 말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인권에 대한 존중, 보호, 실현, 촉진 등 보장의무를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인권 보장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선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없이 인권이 실현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권이라는 인류 전체의 보편적 원칙과 도시라는 삶의 터전을 하나로 결합하는 인권도시(Human Rights + City)라는 개념이 등장하였고, 인권도시에서는 이전까지 주로 국가차원의 주제였던 인권을 도시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누구나 도시 생활의 자유와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포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인권도시를 위해서는 행정에 있어 인권규범, 인권실행기구, 인권정책 및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인권규범에는 인권조례, 인권헌장, 인권선언 등이, 인권실행기구로서는 인권위원회, 인권전담조직,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등이, 인권정책 및 프로그램으로는 인권실태조사, 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영향평가, 인권지표, 인권교육, 인권정책협의회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 의해서만 인권도시를 이룰 수는 없으며, 시민들로부터의 인권요구, 인권의식 향상 및 인권존중 문화, 인권 네트워크 및 연대가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었고,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권도시로서의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단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편차가 생기고 있어,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인권기본조례의 정비 및 인권위원회의 위상 정립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인권위원회의 위상정립은 단지 인권기본조례상 인권위원회규정의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위와 같이 인권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인권규범, 인권실행기구, 인권정책 및 프로그램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 및 재구성이 필요해보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엄중한 상황임을 공감하고,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를 되새기며, 소통을 통하여, 변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로서의 모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 2. 광역지자체의 관심과 의지를 이끌어낼수 있는 제도

인권에 기반한 행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광역지자체(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광역지자체의 관심과 의지를 이끌어낼 방안들에 대하여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 1) 단체장 주관 인권정책회의

단체장 주관 인권정책협의회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인권정책회의를 운영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인권정책회의는 단체장인 시장이 주관하고, 관계 부서 실·국장급 공무원과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관계 부서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중요한 인권정책으로 통일적인 인권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1회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도 가능합니다.

단체장 주관으로 인권정책회회가 준비되고, 운영된다면, 그리고 관련부서 책임자급 공무원들이 함께 하고, 인권위원장이 참여하게 된다면, 지자체가 인권에 기반한 통섭행정을 펼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 제7조의2(서울시인권정책회의)

- ①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서울시인권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정책회의는 시장이 주관하며, 관계 부서 실·국장급 공무원과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참석한다.
- ③ 정책회의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관계 부서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중요한 인권정책으로 통일적인 인권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9. 12. 31.>
- ④ 정책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정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정책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장이 된다.

### 2) 인권현장등 선포

궁극적으로 혐오와 차별을 배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최우선시 하는 인권도시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와는 달리 반복되면 차별이 될 수 있고, 혐오가 될 수 있으며, 증오가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배제할 수 있도록 인권헌장 선포 및 인권선언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만간 국회에서 제정될 인권기본법과 평등 및차별금지법에 보조를 맞추어 평등및차별금지조례 등을 제정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 면에서는 평등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피해는 절대로 평등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12조(서울시민 인권헌장) 시장은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한다.

제17조(광주인권헌장 실천 확산) 시장은 광주인권헌장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홍보하여 시민이 생활속에서 인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3) 인권지수등 설정 및 평가

지자체는 5년단위의 종합적인 인권정책기본계획과 매년 이를 구체화한 실행계획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이와 더불어 인권지수와 인권지표를 개발/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주기적인 평가를 한다면, 모든 행정체계에 인권이 기반이 될수 있을 것이며, 공직사회에도 행정이 곧 인권의 실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자세도 변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 광주인권조례

제9조(인권지수의 개발·시행) 시장은 인권 보장과 증진, 국제인권규약 및 권고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위해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4) 인권영향평가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판데믹이 계속화 지속화 되는 상황속에서는 인권영향평가의 생활화, 상시화를 제안합니다. 긴급 중대한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이에 위와 같은 처분시 자체적인 인권영향평가 리스트를 제작하여 평가하고,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인권담당부서와 협의하고, 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등에 자문을 구하여 인권영향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인권영향평가 리스트에는 현안 및 대안에 있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침해하는 인권(법익)을 기재하고, 둘 사이의 경중을 고려하고 비교형량하는 등 좀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메뉴얼 제작이 필요합니다.

일상이 관행이 되고, 관행이 시스템화 제도화 될수 있습니다. 방역과 복지를 포함한 행정은 중국적으로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실현을 위한 것임에도, 마치 사회유지, 사회안정화를 위해 시혜를 주니 따르기만 요구한다면,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의식 발현을 저해할 수 있으며, 오히려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8조(인권영향평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9. 29.]

광주 인권 조례

제20조(인권영향평가) ① 시장은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

② 인권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7. 1.>

1. 조례·규칙

2. 인권취약계층 등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시장 또는 인권증진시민위원회에서 선정된 시책 등 <개정 2020. 01. 01.>

3. 인권취약계층 등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시의회 의장이 의뢰한 시책 등 <보호신설 2020. 01. 01.>

제20조의2(평가절차 등) ① 인권영향평가는 인권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내용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나, 광주광역시 인권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규칙 : 법제심사 의뢰 전
2. 제2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책 등 : 해당 계획 확정 전 <개정 2020. 01. 01.>

③ 시행중인 조례와 규칙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인권증진시민위원회에서 시민의 인권증진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책 추진 중 또는 완료 후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④ 인권영향평가를 받고자 하는 관련 부서의 장은 평가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또는 조례·규칙안 등 관련 자료를 평가추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7. 1.>

제20조의3(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권고) ①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시민의 인권보장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진 중인 시책 등에 대한 개선, 중단 등의 조치를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조례·규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재검토해야 할 조항이 있을 경우, 평가부서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를 인권증진시민위원회에 사후 통지해야 한다.

③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권고를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에 따라야 한다.

④ 관련 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검토결과를 평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 5) 부단체장 직속 과단위 이상의 인권전담조직

광역시자체 별로 과단위이상의 인권전담조직이 갖추어져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팀단위이고, 아직도 인권전담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인권행정이 바로 서고, 칸막이 행정을 극복하고, 인권이 행정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근간이 되기 위해서는 단체장 직속이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부단체장 직속의 인권전담

조직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며, 최소 과단위의 인권전담조직이 만들어져,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를 넘어 인권에 기반한 행정의 지속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표 4> 광역시·도 인권 전담부서 구성 현황 (2019. 8월 현재, 전북도 인권담당관실 제공)

구분	시도	전담부서			인권센터 별도 구성			비고
		인권부서	구성인원	임기제	운영 여부	구성인원	임기제	
전담부서 있는 경우 (4)	서울	인권담당관 (21명)	4급 1명 5급 7명 6급 5명 7급 이하 6명	5급 4명 6급 1명	X			조례에 인권센터 설치 규정된 있으나 실질적 하지 않음
	경기	인권담당관 (12명)	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7급 이하 4명	5급 1명 6급 2명	X			
	전남	인권담당관 (1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7급 이하 3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X			
	경기	인권담당관 (1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이하 4명 9급 1명		O (2명)	5급(소인원) 1명 7급 1명	5급 1명 7급 1명 (사건처리팀)	조례
전담부서 없는 경우 (9)	충청	자치행정과 인권팀(3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O (3명)	5급(소인원) 1명 6급 2명	5급 1명 6급 2명	조례
	대전	자치행정과 인권팀(3명)	5급 1명 6급 2명	6급 1명	O (4명)	5급(소인원) 1명 6급 3명	5급 1명 6급 3명	주민권 위탁
	충청	자치행정과 인권팀(2명)	5급 1명 7급 1명		O (4명)	5급(소인원) 1명 7급 2명 (자치행정팀 내 별도 팀)	6급 1명 7급 1명	조례
	전북	토민협력사업 인권센터(3명)	5급 1명 (소인원) 6급 1명 7급 1명 (사건처리팀)	5급 1명 7급 1명	X			
	경기	자치행정과 인권팀(3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X			
	제주	자치행정과 인권팀(5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10급 1명	7급 1명 (사건처리팀) 9급 1명 (사건처리팀)	X			
	부산	인권노동행정팀 인권팀(2명)	5급 1명 6급 1명		X			
	대구	시민소통과 인권팀(3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X			
	인천	노동인권팀 시민인권팀(3명)	5급 1명 6급 2명	6급 2명	X			
전담부서 없는 경우 (4)	광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O (4명)	5급 1명 7급 1명	5급 2명 7급 1명	조례
	부산	시민소통협력과 인권영용체팀			X			
	세종	자치분권과 자치협력팀			X			
	영광	자치행정과 자치제도팀			X			

### 6)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간 소통과 연대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가 구성되어 함께 소통하며 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의 지역화와 지역 인권위와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사이에 소통과 협력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와의 소통을 담당할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주기적인 간담회등을 통해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광역지자체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에 대하여 법적근거가 없어 지원을 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광역지자체의 조례에 이미 인권도시 구

현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지역의 인권 보호와 향상 역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으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둘 수 있으므로,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에 대하여 자문기구의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상호 소통, 연대하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인권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제13조의2(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인권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9. 29.]

#### 7) 광역지자체와 소속 기초지자체간 인권협의체 간 협력

인권의 지역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에 속한 기초지자체에도 인권기본조례 제정 및 인권위원회 설치, 인권전담조직 등이 필요합니다.

광역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각 기초지자체에 인권기본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원하고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각 기초지자체에도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인권전담조직이 생겨난다면 광역지자체가 인권도시로 나아감에 있어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 8) 인권네트워크 운영

인권의 사각지대가 코로나19의 사각지대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의 사각지대 일수 있는 영역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정비하고, 사각지대에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돕고 협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권사각지대 단체간 인권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여, 상호 협력하고, 연대할 뿐만 아니



라 행정과도 계속해서 소통할수 있어야 합니다. 비대면 언택트시대에 대비한 화상회의 등 인권네트워크 온라인 소통체계와 시스템 구축에도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합니다.

### 9) 광역지자체 인권전담조직 협의체 운영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외에도 인권행정을 담당하는 광역지자체 인권전담조직의 협의체가 구성되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상시적으로 소통을 통하여, 상부상조 할수 있도록 하고, 지역인권 편차를 줄이고, 지역인권 향상을 도모할수 이있도록 해야 합니다.

### 10) 시민인권실천단 등 운영

시민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시민인권실천단을 운영을 한다면, 시민들에게 조금더 인권행정을 홍보할수 있으며, 저변을 확대할수 있을 것입니 다.

#### 광주 인권 조례

제12조(시민인권실천단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시민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시민인권실천단(이하 “인권실천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실천단은 시민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
2. 시에서 추진하는 인권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3. 제도 개선사항 제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임무

③ 시장은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한 인권실천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인권실천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3. 인권위원회 운영 개선 및 권한 강화

인권도시로서 올바른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성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가 그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고, 이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인권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구로 승격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지만, 현재 상황속에서 실현가능하면 서도한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몇가지 방안만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1) 현행 인권기본조례 규정

서울 인권기본조례

제3장 인권위원회

제14조(설치) 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 9. 29.>

②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9. 29.>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③ 인권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8조에 따른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에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시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 9. 29.>

제15조(구성) ①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9. 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 2명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6. 1. 7., 2019. 3. 28.>

1.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

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시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4급이상 공무원(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은 인권위원회를 대표하고, 인권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9. 29.>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9. 29.>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6. 9. 29., 2019. 3. 28.>

제17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시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9. 29.>

② 인권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 2) 인권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일반적으로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는 분기 1회(연 4회) 정기회의 개최하고, 임시회의 개최할수 있으며, 재적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과반수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등 판데믹이 계속될 것이고, 반복될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도 인권 위원들의 참여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공간의 편차가 클수 있습니다. 더욱이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행정에서 절차를 밟아 대면회의를 하는데까지, 시간도 많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정족수 충족등 여러 가지 절차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서면 위임과 서면 결의를 통해 인권위원회 회의를 가능하도록 하며, 온라인 회의도 가능하도록 할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 개정없이도 위와 같이 회의를 진행할수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 서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므로, 궁극적으로는 조례 개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3) 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 방안

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기본계획을 비롯하여 지자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에 심의 자문할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의견도 개진할수 있으며, 개선 권고를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도 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모든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에 심의자문권한을 넘어 의견개진, 더 나아가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단체장등에게 개선 권고할수 있어야 합니다.

단체장등에 대하여 인권위원회는 서면으로 권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권고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여부를 인권위원회에 통지하

고, 대외적으로 공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광역시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는 위와 같이 권고와 이행여부등에 대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대응을 통하여 문제해결할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광주인권조례

제20조의3(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권고) ①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시민의 인권보장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진 중인 시책 등에 대한 개선, 중단 등의 조치를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조례·규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재검토해야 할 조항이 있을 경우, 평가부서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를 인권증진시민위원회에 사후 통지해야 한다.

③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권고를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에 따라야 한다.

④ 관련 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검토결과를 평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 4. 결론

현실에서 부딪히는 난관과 제도적인 미비로 인하여 좌절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광역지자체에 인권기본조례가 만들어지고, 인권위원회가 구성되고, 인권전담조직이 운영되면서, 인권도시로 나아감에 동력과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체가 구성되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협력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있어 더욱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과 생각이 교차하고, 더 많은,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생기지만, 이 글은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단지 문제제기를 하고, 함께 논의를 할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역에 나오는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를 되새기며, 소통을 통하여, 변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로서의 모습을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갈수 있기를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